

## 미편집본

배포: 일반  
2016년 6월 15일

비공식 번역본: 한국어  
(VII. 결론 및 권고)

### 인권이사회

제32차 정례 회기

의제 항목 3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발전권 등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방문조사 보고서\*

#### 사무국 주(註)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특별보고관은 정부의 초청에 의거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2016년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방문하였다.

\* 가장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마감시한 이후 제출되었다.

## 목차

	쪽수
I. 서론 .....	3
II. 배경과 맥락 .....	3
III. 국제법적 체계 .....	4
IV.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현황 .....	5
A. 평화적 집회의 자유 .....	6
B. 결사의 자유 .....	10
V. 세월호 참사 .....	17
VI. 국가인권위원회 .....	18
<b>VII. 결론 및 권고 .....</b>	<b>19</b>

## VII. 결론 및 권고

89.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은 시위 참가, 파업 참여, 단체 가입, 선택한 단체에 대한 기부 등의 형태로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범주의 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집회 및 결사에 대한 권리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대의견의 표현을 엄격히 통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90. 특별보고관은 정부당국이 법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분명히 노력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인권법 기준과 일련의 상충 및 간극을 보여주고 있음에 대하여 특별보고관은 우려를 표한다:

- (i) 다수의 핵심영역에서 법적 체계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ii) 법적 체계를 통해 정부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
- (iii)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당국이 집회 및 결사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91. 대한민국이 이뤄낸 의미있는 민주주의적 성과들을 당연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별보고관은 강조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제도는 끊임없는 관리유지와 강화를 필요로 한다. 변화하는 경제적, 지정학적 여건들로 인하여 제기되는 대내외적 도전과제들을 별개의 문제로 처리하기보다는 동의와 반대가 똑같이 환영받는 민주주의 기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

92. 본 보고서는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출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특별보고관은 정부당국이 그러한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93. 특별보고관은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한다:

### 일반적 권고

- (a)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사회,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범주의 이슈에 관하여 견해를 표현하는 정당한 수단이라는 점, 또한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축소가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정부당국의 의무라는 점을 법률과 관행 모두에서 인정할 것.
-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주는 법적 체계가 국제인권 규범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특히, 제한조치에 관한 결정에 있어 권리의 제한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임을 보장하는 객관적이고도 상세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 권리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정당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여, 그리고 민주사회에 필요한 때에만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함.

(c)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들을 비준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

(d)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에 관한 권고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그 적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

(i)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사전통고 정도만으로 규율되도록 보장할 것;

(ii)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할 것; 그리고

(iii) 집회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보장할 것.

(b) 물대포와 경찰버스 차벽 등 집회의 관리에 사용되는 방책들을 재검토하여, 그러한 방책들이 무차별적으로 또는 평화적 집회참가자들을 겨냥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고조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며 집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c) 훈련을 받은 경험있는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집회를 관리하도록 하고, 동목적으로 의경을 배치하는 일을 삼가할 것.

(d)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들을 수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장하고, 집회주최자를 비롯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할 것.

(e) 집회의 관리에 있어,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집회모니터단, 언론 등 모든 범주의 집회참가자들의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권고

(a) 노동조합, 정당 등 단체의 설립에 관하여 다음을 보장할 것:

(i) 통보절차 정도만이 요구되도록 할 것;

(ii) 간략하고, 신속하며, 소관당국 등에 관한 명확한 요건 제시를 통해 절차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할 것;

(iii) 결과적으로 법인격이 획득될 수 있도록 할 것;

- (iv) 모금활동의 사전 또는 사후에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하여 지나치게 간섭적이고 과중한 요건들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것.
- (b) 노동법을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반영할 것:
  - (i)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가입을 비롯한 결사의 자유;
  - (ii)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
  - (iii) 국제노동법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협약의 시행;
  - (iv) 정치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의견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 (c)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인정에 관하여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 위원회(CFA)가 제시한 권고들을 시급히 이행할 것.
- (d) 정당의 설립에 관한 법률과 정책들이 소수정당의 형성을 장려하고 기금 모금에 있어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기타 권고

- (a)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
- (b) 삼성,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 민간기업들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유엔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유엔 기업과인권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c)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함께 다음에 힘써야 한다:
  - (i)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GANHRI)의 권고들을 이행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것; 그리고
  - (ii)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권고들을 이행할 것.
- (d) 특별보고관은 시민사회에 다음을 요청한다:
  - (i)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인권옹호 및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 그리고
  - (ii) 본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들의 이행을 팔로우업하고 모니터링할 것.